

[별지 제21호 서식]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앞쪽)

사업연도	직불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번	부번	주소	농지면적(㎡)	적격여부	수령금(원)	지급면적(㎡)	휴경면적(㎡)

위 지급대상자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사·군·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기본 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	면적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논·밭	논			밭	논·밭	논
합계																					

※ 1ha = 10,000㎡

사도지사는 관할 사·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사·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천원)			지급 면적(m ²)									지급 결과(천원)							
	합계	기본 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 직불 (논활용)	소농직불	면적직불				
		소농	면적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논·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합계																				

※ 1ha = 10,000m²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등 주소	위반 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직불종류: 기본직접지불금(소농·면적) 또는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 친환경인증,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등)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 조사 현장 입회요구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0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준수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오니, 현장에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조사일시	. . . 00:00			
조사목적 및 내용	(예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입회 요구			
조사장소 (현장입회)	(예시) 00도 00군 00면 00리 00-00			
기타 (예시) 제출자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대상에 해당됨)

지자체장(시군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사무소)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 귀하(신고인)
(경유)

제 목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

1. 공익직불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대상자(피신고인): △△△

나. 신고대상 농지(지번):

다. 신고일자:

라. 신고내용

- (예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 신청·수령하였음

마. 조사결과

- (예시) 위 신고내용에 대해 20 . . . 조사한 결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20 . . . 관할 수사기관으로 형사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예시) 위 신고내용에 대해 20 . . . 조사한 결과 공익직불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수사경력자료 등)가 목적(용도) 외 이용(사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장(시군구) 또는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장(지원·사무소)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 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최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최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처분 적정성 등 검토 신청서						
신청 기관	신청기관					
	부서(과/팀명)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부정수급 주요내용 요약	○ -					
관련 법령조항	○ ○ ○					
처분예정 내용 * 계산식 포함	○ 부정수급액(착오수급) 금액 : ○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 - 부과사유 ○ 가산금 부과 금액 : - 부과사유 ○ 환수금액 : - 사유					
기한 및 방법, 납부자명 등	○ 납부기한 : ○ 납부방법 : 일시납 / 분납(○회) ○ 납부자 성명 : - 주소 : - 경영체번호 :					
첨부 자료	- 필수 : 1. 적발 확인서, 2.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관련 검토문서, 3. 처분 사전통지서, 4. 부정수급 관련 증빙서류 - 선택 : 5. 관계자(당사자 등) 의견서 등, 6. 기타 참고서류					

[별지 제33호 서식]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신청면적(m ²)		공부상 면적(m ²)	조사결과										비고 (사유기재)
읍면동	본번	부번	재배	휴경		농지형상 (공부상면적 기준으로 조사, 단위 m ²)				①불이행면적 (신청면적 대비)		농지기능 (불이행 항목 “○” 표시)				
						재배	휴경	부속시설등 (미감액)	폐경 (감액)	미감액	감액	경운 ②	경계 ③	용배수 로④		
00리	111	1	500	200	1000	400	200	0	400	0	100	-	-	-	잡목 100m ² 직불신청	

-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하고 ①항목이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기재
- * 농지형상은 공부상면적 기준으로 조사하되, 불이행면적은 신청면적 대비 ‘미감액은 부속시설등으로, 감액은 폐경’으로 산정하여 작성
- * 부속시설등 : 농지법 상 개량·생산·부속시설(축사제외) 등으로 해당면적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되지 않으나,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 * 미감액(개량·생산·부속시설)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m²이하, 주거목적 제외), 9) 농촌 체류형 쉼터(연면적 33m²이하), 10) 간이저온저장고 (33m²이하), 11)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 * 감액대상(폐경)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포함),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폐기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조경수가 식재,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면적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연락처 :	

※ 신청·등록면적에 폐경 등이 포함된 경우, 농지기능 미유지 경우에는 각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농지의 형상 유지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	이행점검 결과			①부적합 사유	②감액 여부 (○, ×)
			적합 재배	면적(㎡) 휴경	부적합 면적(㎡)		
	1,000	1,000	500	200	300	포장농로 100 묘지 200	○ 또는 ×
	3,000	2,500	1,500	0	1,000	주차장 1,000	

① 농지형상 부적합 사유: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에서

농작물생산이가능하도록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부적합면적: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이 유지·관리되지 않는 생산·개량·부속시설(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포장농로 등)과 폐경(건축물, 묘지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됨

② 폐경, 농지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등록한 경우에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10% 이상)가 감액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 직접지불제 이행 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의 부적합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대상(휴경·폐경 면적 등)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콜센터 1644-8778 전화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지원장·사무소장